

「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8월 8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)

가. 제안이유

-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관리 자격
결격사유의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금지(안 제15조)
 - 수탁관리자가 될 수 없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
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 정비
-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(부칙 안 제2조)
 -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
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관리에 있어 수탁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15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